
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

2023. 5.

순서

1.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1
2.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평판리스크
완화 2
3. 지방은행 혁신금융 활용 방안 검토 3
4.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공기관 거래 비중 증대
요청 4
5.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6

1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

1. 현황

-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, 20년부터 평가를 실시 중
- 영업점 진출 지역에 대해 지역별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등급 산정, 평가결과는 공시후 경영실태평가 및 지자체·지방교육청 금고선정 평가에 활용

2. 문제점

- 소수의 영업점으로 특정 지역에 진출해 있을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, 해당 지역의 평가 결과가 최종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침

<지역재투자 평가 결과(2022년)>

구분	부산	대구	광주	대전	울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최종 등급
대구	우수	최우수	-	다소 미흡	양호	-	-	-	-	-	최우수	다소 미흡	-	우수
부산	최우수	양호	-	다소 미흡	양호	-	-	-	-	-	-	우수	-	우수
광주	-	-	최우수	-	-	-	-	-	-	최우수	-	-	-	최우수
제주	미흡	-	-	-	-	-	-	-	-	-	-	-	최우수	우수
전북	-	-	-	우수	-	-	-	다소 미흡	최우수	-	-	-	-	최우수
경남	최우수	양호	-	-	최우수	-	-	-	-	-	다소 미흡	최우수	-	최우수

3. 개선방안

- 영업점이 1개 이하인 지역은 평가 제외 및 영업점 수에 따른 가중치 세분화

○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메뉴얼

현행	개정 의견(예시)
II. 평가항목 및 결과 산정 (중략) 개별지역 영업점 수에 따른 가중치부여 (3개 이상: 100%, 2개 이하: 30%)	II. 평가항목 및 결과 산정 (중략) 개별지역 영업점 수에 따른 가중치부여 (10개 이상: 100%, 6개~9개: 50%, 2개~5개: 30%, 1개 이하 : 0%)

2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평판리스크 완화

1. 현황

- 매월 은행연합회에서 전국단위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중
 -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(잔액기준 추가)
 - 현재 대출금리 공시는 신용평점 구간별로 공시

2. 문제점

- 은행권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교 공시되고 있으나, 조달 경쟁력이 열위하고 중소기업대출 위주의 대출취급으로 지방은행 평판리스크 증가
 - 수도권 대비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
- 잔액금리의 변동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최초 공시 이후 순위가 계속 유지되어 평판리스크 증가 지속화

3. 개선방안

- (1안) 지방은행 공시대상 제외 희망
- (2안) 1)지역별·신용등급·취급금액별 별도 공시
 - 가)수도권, 광역시, 도별로 분리
 - 나)시중은행은 모든 지역을,
지방은행은 해당 주영업권에 한해 공시
- 2)잔액금리 공시횟수 축소(1개월 → 분기별)

3 지방은행 혁신금융 활용 방안 검토

1. 현황

- 지방은행은 지역민과 지역 중소기업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
 - 하지만, 현재 혁신금융 · 은행권 경쟁 촉진의 논의들이 대부분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, 지방은행 존재감 약화

2. 문제점

- 지역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경우, 혁신금융을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점점 확보 미흡
 - 지역민 · 중소기업은 수도권 대비 혁신 금융 혜택 다소 미흡
- 시중은행, 인터넷 은행에 비해 플랫폼 · 디지털 경쟁력에서 다소 뒤쳐지는 지방은행의 경우, 향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

3. 개선방안

-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금융&비금융을 아우르는 지방은행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필요
- 오프라인 영업점도 하나의 주요한 플랫폼. 지역 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검토 (지방은행이 테스트베드 역할)
 - (영업점 활용 혁신금융 예시) 다양한 카드사 상품 판매, 지역 통신사와 연계한 통신상품 판매 등

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공기관 거래 비중 증대 요청

1. 현황

-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공기관(공기업 포함)과의 지방은행 상생 방안 마련 필요
 - 지방은행은 지역 자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내 재투자, 지역 소상공인 지원, 환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수행중
 -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가 미진한 실정으로 지방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필요
 - 시중은행과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공공기관 금고 경쟁 심화에 따른 지역 환원 규모 축소 우려

2. 문제점

-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거래 미미한 수준
 -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및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등 지역발전계획 이행하여야 함.
 - 그러나,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등 예산에 대한 거래는 시중은행과의 계속거래로 지역기업인 지방은행과의 거래가 매우 낮은 상황임
 - 지방(혁신도시) 이전 공공기관은 수익성 위주의 경쟁입찰 운영 방식에 따라 시중은행 위주 거래 지속으로 지방은행과의 거래 제한적

- 지방은행 및 지역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 노력 필요
 - 금융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로써 지방은행의 거래가 우선시 되어야 함.
 - 지역산업 육성, 연관기업 유치, 중소기업 지원 등 협력
 - 지방은행에 동반성장 협력기금 등 예치 필요
- 시중은행의 지방 금고 사업 진출에 따른 과다출혈 경쟁
 - 지역민의 금융 편의성 및 지역 기여 실적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한계에 따른 금고 지정 평가 불이익 발생
 - 과다 경쟁에 따른 지역 환원 규모 축소 우려 존재

3. 개선방안

-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정책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거래 비중 증대 방안 마련 필요
 -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강한바, 지방 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포함 지역 기업 상생 방안의 제도화 마련 필요
 - 지역경제 지원사업(지역화폐, 지역 신용보증 등) 우선 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인 지역 재투자 및 자금 공급 역할 집중 가능
- 제도적 보완을 통한 지방은행 거래 확대
 -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 시 지방은행 상생 협력 실적 평가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정 요청
 - 지방은행 예금 예치 비중(최소 예치 비중 설정) 반영, 지역 기업(지방은행) 협력사업 실적 반영 등
 - 지방 금고 선정 시 지역민 편의성 및 지역 환원 기여 실적을 감안하는 등 지역은행 가점 확대 지원

5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

1. 현황

- 과거 다양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, 실질적인 정책은 시행되지 못하였음
- 지방은행은 어떤 보호막 없이 무한경쟁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역자금을 해당지역에 재투자하고 분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고리 역할을 수행 중
 - 또한, 지역민의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시중은행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저신용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지역 사회 공헌활동 등 드러나지 않는 사회/경제 안전망 역할을 구축

2. 문제점

- 지역 소멸위기와 함께 지방은행 역시 무한경쟁 속에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시중은행과 차별없는 규제와 핀테크, 증권/보험사 등 무차별적 시장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
- 인구·기업의 수도권 집중과 같이 자금 또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재투자자의 기능이 약화되고, 기업 또한 투자의욕 저하로 힘들어 하고 있음
- 지방소재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속적인 지역 경기부진, 금융서비스의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와 지역자금의 시중은행 이탈 가속화
 -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열위한 규모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高금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밖에 없고 여·수신 금리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지역자금의 시중은행 이탈중
 - 지역자금의 시중은행 이탈이 증가할 경우 전반적인 지방은행 경쟁력 약화는 물론 결국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전파

3. 개선방안

- 지방은행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「지방은행 육성 특별법」 제정 필요
 -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많아져야 하며, 이들 기업을 위한 원활한 금융지원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
 - 그간 지방은행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바, 지방은행에 대한 규제 내지 방치보다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방은행 경쟁력 제고와 역할 강화
 -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나아가 지역 경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생태계를 선순환시키는 계기 마련이 기대

지방은행 육성 특별법(예시)

[인센티브 조항]

①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지방은행 법제화 또는 우선권 부여

- 지역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금은 역외 유출 없이 지방은행을 통해 지역 내에서 운용되고 재투자되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
 - ※ 법원공탁금 보관은행 복수지정은 법제화되어 있음(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)

② 지역 이전 공공기관 거래은행 지정 시 우선권 부여 또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자금 예치 비율 의무화

③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지방은행 거래실적 반영

④ 예금보험료 이원화 및 인하 (지역기업/지역민 예금 요율인하 등)

⑤ 신보/기보/재단 출연료율 이원화 및 인하 (지역기업 대출 요율인하 등)

⑥ 지방은행 법인세율 인하

⑦ 지역민 예금 비과세 (일정금액 이하 지역민 정기에·적금 비과세)

⑧ 수도권 본사 대기업의 지역내 매출 지방은행 자금예치 등

[의무 조항]

- 시중은행과의 규제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은 은행자체 또는 지자체와 연계된 저출산, 지방경제, 노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환원